



# 업무협약서

“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”과 “LH경남지역본부 김해권주거지원 종합센터”는 지역 내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양 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김해권 내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약의 원칙)** 본 협약은 양 기관 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협약을 이행하며, 상호 존중에 기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.

**제3조(협약의 내용)**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.

1. “LH경남지역본부 김해권주거지원종합센터”는 지역 내 장애인 등 주거약자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,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·협조하여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며, 정기적인 직원참여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여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에 상시 협력한다.
2. “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”은 김해지역 주거취약가구 발견 등 주거문제 발생 시 LH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협력하고, 복지관 내 사업정보를

공유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사각 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.

3.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**제4조(비밀유지)** 협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 각종 자료와 정보는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,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5조(효력)**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, 협의하여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, 협약의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, 협약 체결 후 기관의 명칭, 대표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
**제6조(협약서 교환)**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 간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0월 31일



관 장 강 미 경

센 터 장 이 동 현

김미경

이동현